

## 학 사 운 영 규 칙

2019.04.24. 개정

2022.10.19. 개정

2024.04.03. 개정

### 제1조 (졸업자격)

- ① 충남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교육과정에서 정한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논문, 졸업시험, 전공 관련 전국대회 수상, 국가자격증 취득 중 1개 항목에 대한 심사기준과 포트폴리오 발표를 통과한 자에게 졸업자격을 부여한다.
- ② 졸업예정자는 학과에서 정한 기일 내에 상기 졸업자격 항목을 선택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.
- ③ 학·석 연계과정 학생과 조기졸업대상자는 졸업예정자와 같은 자격을 부여한다.

### 제2조 (심사기준)

#### (1) 졸업논문

- ① 졸업예정자는 충남대학교 학칙 제 68 조(졸업논문)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졸업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.
- ② 졸업논문은 개인별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, 6 학기 수료자를 대상으로 7 학기 시작 전에 학사 일정에 따라 지도교수를 배정한다.
- ③ 대상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논문작성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, 지도교수는 논문작성의 전 과정을 지도하여야 한다.
- ④ 심사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회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한다. 불합격자는 2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#### (2) 졸업시험

- ① 졸업시험은 7 학기(97 학점이상 이수) 대상자부터 응시할 수 있으며, 매학기 1 회(5 월, 11 월) 실시한다.
- ② 시험과목은 3 과목(유체, 구조, 설계 및 생산)으로 한다.
- ③ 합격 기준은 각 과목별 100 점 만점에 평균 60 점 이상이며, 개별 과목이 50 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.
- ④ 전공분야의 취업 연계형 인턴 결과로 18 학점 취득예정 시 졸업시험은 구술고사로 대체한다.
- ⑤ 기사자격증에 대해 필기 합격 시 졸업시험 중 2 과목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.
- ⑥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인정된 전국대회에서 4-6 등 입상은 졸업시험 2 과목을 합격한 것으로, 전국대회 참가 시에는 1 과목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.
- ⑦ 4 대보험이 인정되는 취직자의 경우, 교수회의를 통해 졸업시험을 구술고사로 대체한다.

### (3) 전공 관련 전국대회 수상

- ① 졸업 전 전공 관련 전국대회(대한조선학회 주관 전국대회인 학생선박설계컨테스트, 자율운항보트 경진대회, KTTC 실험유체역학컨테스트 및 특허유니버시아드, IMO 모의총회 등)에서 입상 이상을 수상으로 인정한다.
- ② 상기 항에서 정한 이외의 전국대회 입상 실적의 인정 여부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.

### (4) 국가자격증

- ① 국가자격증은 입학 후 취득한 전공 관련 기사자격증(조선기사, 용접기사, 기계기사 등)에 대해서 인정한다.
- ② 전공 관련 기사자격증의 인정 여부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.

### (5) 포트폴리오 발표

- ① 졸업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학과에서 지정한 내용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지정된 일정 및 절차에 따라 발표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**- 부 칙 -**

제1조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- 부 칙 -**

제1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**- 부 칙 -**

제1조 본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.